



제 419회 국회 (임시회)  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#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한  
해양폐기물 보관·처리 시설의 설치·운영 등 지원〉  
■ 허종식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4934호

2024. 12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최선영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I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한 해양폐기물<br>보관·처리 시설의 설치·운영 등 지원 ..... | 2 |

## I. 제안경위

2024년 10월 28일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,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,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3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한 해양폐기물 보관·처리 시설의 설치·운영 등 지원

##### 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해 해양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,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3 신설).

[ 표 ] 개정안 조문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설> | 제15조의3(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) ① 국가는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br>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
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는 해양폐기물의 수거,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, 수거·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런데,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 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되므로 해당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, 개정안은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해 해양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,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개정안과 같이 섬 지역에 해양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,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을 육지로 싣고 나와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, 재정지원의 형식, 적용 대상 섬의 특정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첫째, 현행법 제3조에서는 영해·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,

현행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(첨부1 참고)은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, 개정안의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형식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둘째,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객관적인 조사연구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<sup>1)</sup>,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을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사·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□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,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, 해류 등으로 인해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지역 및 지원 대상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1) 해양수산부·해양환경공단의 「2022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용역」에 따르면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가 있으나,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상세정보 수집 및 DB 구축 등은 부족한 상황으로, 관련하여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대응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음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418 |

## 첨부 1

###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('23년 말 기준)

□ (개요) 전국 주요항구 주변 및 도서지역에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최종처리 전까지 임시 보관하는 시설 운영

□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

| 구분 | '10~'19 | '20 | '21 | '22 | '23 | 합계  |
|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육상 | -       | 43  | 34  | 31  | 25  | 133 |
| 선상 | 490     | 72  | 62  | 57  | 60  | 741 |
| 계  | 490     | 115 | 96  | 88  | 85  | 874 |

\* 육상집하장 : '20~'23년간 국비 45.5억원 설치 지원(국비 70% / '24년 예산 편성시 지출재구조 검토과정에서 내역 폐지

\*\* 선상집하장 : '19년 지방이양 / '20년부터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설치, 운영

□ 지자체별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

| 구분 | 합계  | 육상  |    |    | 선상  |
|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-|
|    |     | 소계  | 육지 | 도서 |     |
| 합계 | 874 | 133 | 66 | 67 | 741 |
| 부산 | 3   | 0   |    |    | 3   |
| 인천 | 14  | 13  | 2  | 11 | 1   |
| 경기 | 9   | 4   | 4  |    | 5   |
| 충남 | 28  | 2   | 1  | 1  | 26  |
| 전북 | 39  | 7   | 6  | 1  | 32  |
| 전남 | 574 | 55  | 15 | 40 | 519 |
| 경남 | 181 | 26  | 13 | 13 | 155 |
| 경북 | 4   | 4   | 3  | 1  |     |
| 제주 | 6   | 6   | 6  |    |     |
| 울산 | 1   | 1   | 1  |    |     |
| 강원 | 15  | 15  | 15 |    |     |